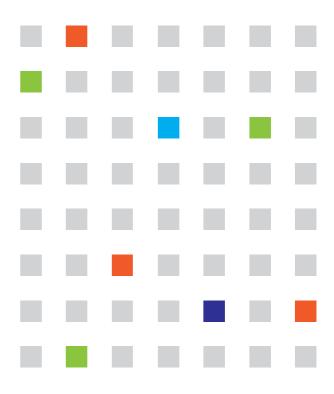


2022년 9월 AML REPORT

- 1. 자금세탁방지(AML) 동향
- 2.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 유형
 - 관세청 보도자료



본 자료는 당행 자금세탁방지부에서 임직원 교육용으로 제작한 것으로 외부 유출을 금합니다.

자금세탁방지(AML) 동향

(1) 관세청, 금감원에서 통보한 외환송금 업체 자금세탁 여부 조사

- □ 관세청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불법 외환거래가 의심되는 23개업체 명단을 이첩 받은 후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 한 것으로 나타났다.
- □ 한편, 관세청과 금감원과의 공조 조사 외에도 서울본부세관이 올해 2월부터 가상자산 관련 불법외환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총 2조715억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 □ 서울세관은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총 16명을 검거했으며, 이 가운데 2명은 검찰 송치하고, 7명은 과태료를 부과한데 이어, 7명은 추가 조사 중이다.
- ⇒ 시사Point : 최근 해외송금 관련 감독당국의 관심이 집중되므로, 외환송금 업무 시 더욱 엄격한 주의의무 이행 필요!!

(2) 美 규제당국,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조사

- □ 1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은 미 법무부가 2020년말 바이낸스에 돈세탁 방지 와 관련해 광범위한 내부 자료와 통신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 □ 법무부는 바이낸스의 경영과 회사구조, 재무 상태, 돈세탁 방지·제재 준수, 미국 내 사업 등 광범위한 범위의 자료를 자발적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 □ 또한, 미 은행비밀법 준수 책임이 있는 임직원 명단, 불법 금융 차단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 의심스러운 금융거래 신고 내용, 랜섬웨어·테러· 다크넷(온라인 암시장)관련 이용자와 미국 제재 대상 인물의 거래 정보도 법무부가 요구한 자료에 포함됐다.
- □ 바이낸스는 현재 미국 외에도 10여개 국가 규제당국으로부터도 돈세탁 의혹 등에 대한 경고를 받은 상태로. 지난 7월에는 네델란드 중앙은행으로부터 금융범죄법 위반으로 300만유로(약 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 시사Point : 美규제당국도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AML규제 및 감시 강화!!

(3) 금융위 "지금세탁병지 미흡" 기상자산 요주의 시업자 대상 수시검사 실시

- □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일부 가상자산 사업자들에 대한 현장검사 후 인력·체계 등이 미비하다고 판단하여,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정기검사는 물론 요주의사업자를 대상으로 수시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 □ FIU는 "22년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현장검사 실시 결과,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한 내규 등 외형을 갖추고 있으나,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인력 및 시스템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 또한, <mark>가상자산 거래의 안정성과 관련해 미흡한 것들의 예시로 내규, 데이터</mark> 관리정책, 서비스 관리 등의 부족을 꼽았다.
- □ FIU는 가상자산 거래 및 핀테크 등 새로운 경제 주체의 출현과 이에 대응하는 제도 개선으로 인해 의심거래정보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시스템 개선과 정보보호체계 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 시사Point : 감독당국,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검사를 더욱 강화 추세!!

(4) '암호화폐로도 은폐', 대구지검 성매매 사이트 지금세탁 적발

- □ 대구지검은 성매매 알선 사이트의 광고수익금 14억 4천만원을 암호화폐 등으로 자금세탁한 범죄 조직원 4명을 구속 기소하였다.
- □ 이들은 여러 대포통장들을 통한 이체 후 현금 출금, 해외 거래소를 통한 암호 화폐 구입 및 전자지갑 전송 등의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자금 출처를 속였다.
- → 시사Point : 암호화폐는 범죄수익을 자금세탁 하는데 활용되므로, 암호화폐 (가상자산) 연계 거래는 각별히 유의 필요

(1) 유형 1: 무역대금 위장 송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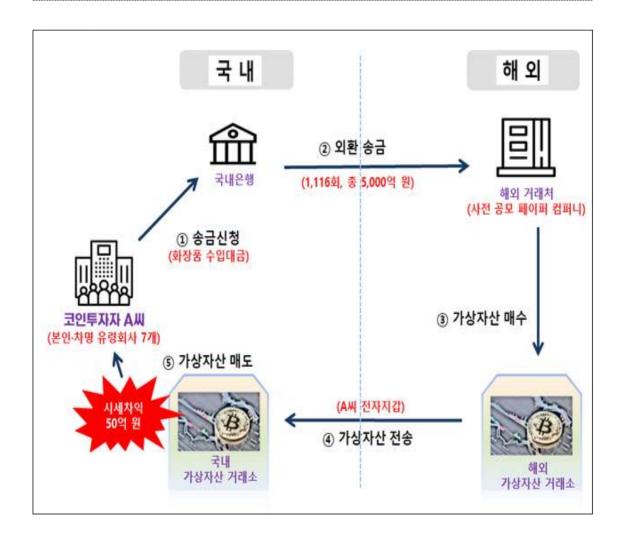
□ 「가상자산 차익거래 목적의 반복 거래」 전통적인 수법의 불법 외환 거래

국내·외 가상자산 시세차익을 노리고 시중은행을 통해 무역대금으로 위장한 1조3천40억원 규모의 자금이 해외로 송금된 사실이 밝혀졌다.

일례로 A씨는 지인 명의로 국내에 여러 개의 유령회사를 설립한 후 화장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해 수입 무역대금 명목으로 은행을 통해 해외로 외환을 송금했다.

이후 이 자금으로 **해외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한 후 **국내 전자** 지갑으로 이체해 **국내거래소에서 매도**하는 거래를 수백차례 반복해 약 50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이 드러났다.

⇒ 「외국환거래법」제15조 위반(허위증빙) / 110억 원 상당의 과태료 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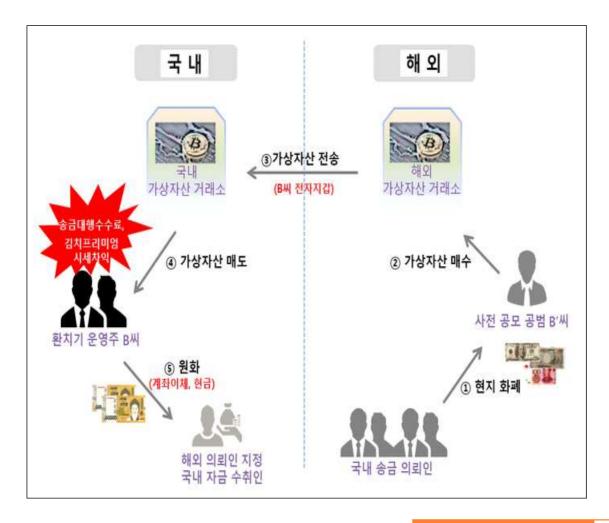
(2) 유형 2: 무등록 외국환업무(송금·수령 대행) 영위

□ 해외에서 매수한 가상자산을 국내로 이전시켜 매도 '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종 환치기'

해외에서 구입한 가상자산을 국내로 옮겨 판 뒤 특정인에게 자금을 지급하는 3천199억 규모의 불법외환거래도 적발됐다.

해당 사례로는 국내에서 무등록 환전소를 운영하는 B씨는 해외에 거주하는 지인에게 '해외→국내'송금을 원하는 의뢰인들로부터 현지화폐를 받아 해외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토록 했다. 이후 B씨 소유의 국내지갑으로 이체하면, B씨는 국내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도해 원화를 확보한 후 의뢰인들이 지정한 국내 수취인들에게 계좌이체 또는 현금을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 「외국환거래법」제8조 위반(무등록외국환업) / 조사 진행 중(검찰 송치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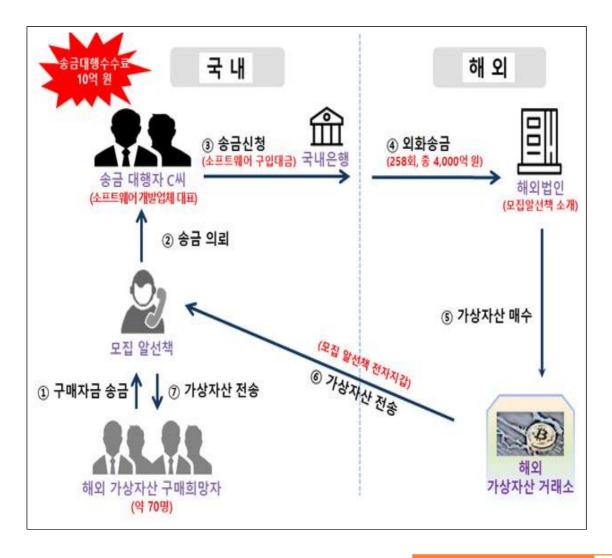
(3) 유형 3: 불법 송금대행

□ 수출입 거래를 가장한 불법 외환거래 「제3자가 가상자산 구입자금 송금」

해외 가상자산 구매 희망자들의 자금을 받아 은행을 통해 무역대금을 가장한 3천8백억원 규모의 송금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챙긴 불법적인 송금 대행 사례

소프트웨어 개발회사를 운영하는 C씨는 모집 알선책을 통해 알게 된 가상자산 구매희망자 70여명으로부터 수년간 4천억원을 받아 본인소유 회사명의의 수입 무역대금 지급을 가장해 은행을 통해 해외로 불법송금했다. C씨는 이 과정에서 10억원의 송금대행 수수료를 챙겼다.

□ 「외국환거래법」제8조 위반(무등록외국환업) / 조사 진행 중(검찰 송치 예정)



(4) 유형 4: 불법 인출 (국내·외 가상자산의 시세차익 악용)

□ 국내 직불카드 등으로 해외 ATM 기기에서 현금 인출하여 가상자산 구매

국내·외 가상자산의 시세차익을 노리고 해외로 출국한 후 현지에서 직접 외화를 인출해 687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매수한 사례

대학생 D씨는 본인과 지인 명의로 발급받은 국내 은행직불카드 수백장을 이용해 수십차례 해외를 드나들면서 해외에서 외환을 출금 했다. 이후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한 후 이를 국내 본인명의 전자지갑으로 이체해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한 사실이 밝혀졌다.

□ 「외국환거래법」제16조 위반(은행을 통하지 아니한 지급) / 검찰에 송치

